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임무보상심의위원회에 자료 보완 요구 근거 마련 등〉

■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08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특수임무보상심의위원회에 자료 보완 요구 근거 마련	3
2.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부상자의 국가유공자법상 보상 근거 마련	8
※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6. 4. 14.
3. 회부일 : 2026.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동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가 까다로운 실정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한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하지 않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

우 보상심의위원회에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유공자 심사 및 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과 그 유족 등으로 보고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특수임무보상심의위원회에 자료 보완 요구 근거 마련

-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사실로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사실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

여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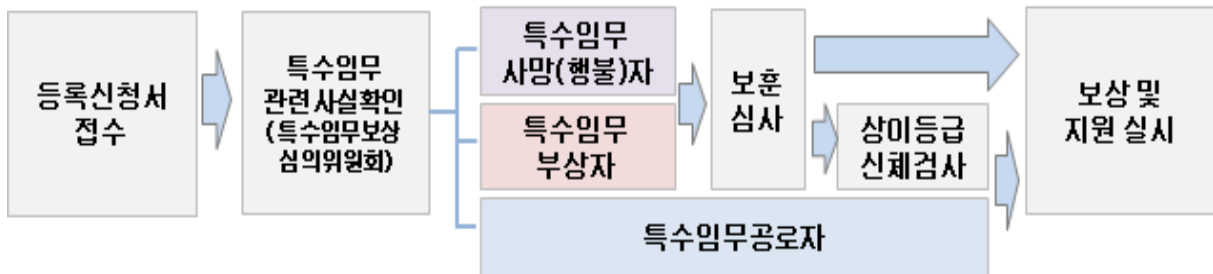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추가를 요구할 수 있음²⁾).

-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 삭제
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 이후 등록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등에 등록결정과 관련된 자료 제출이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음³⁾.

- 즉, 자료 보완 요구 절차는 ① 요건 관련 사실 확인 단계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자료 보완 등 요구와 ② 등록 결정 단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자료 보완 등 요구로 구분되어 있음. ①의 절차는 보훈심사를 거치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규정이고, ②의 절차는 보훈심사 없이 등록결정하는 특수임무공로자를 포함한 전체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규정임.

<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통보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료 보완 요구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관 간 권한 관계를 명확히하고 충분한 자료 확보를 통한 유공자 심사 및 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 보완 요구에 한정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과 같이 자료 제출·보완 요구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신청인,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거치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와 보훈심사 없이 등록결정되는 특수임무공로자의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상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사실로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의 합의제 의결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므로⁴⁾, 현행 시행령과 같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7.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74조의14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9.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보완 요청하는 것이 절차상 더 적합한 측면이 있음.

-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보훈심사 절차 등 보훈심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⁵⁾.

□ 국가보훈부는 현행 법령상 자료 확인 및 보완 절차가 이미 가능하므로 별도의 보완 요구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입법 실익이 크지 않고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
- 10. 제75조제4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11.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 12.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
 - 13.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 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신청인
-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 3. 병무청장
-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신청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 2.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2.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부상자의 국가유공자법상 보상 근거 마련

- 개정안은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몰군경으로 보고 보상하고, 특수임무부상자를 전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9조의2(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예우) 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 제4조제1

	<u>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u>
--	---

-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⁶⁾되고,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으로 등록 결정하여 보상금 지급 등의 예우를 하고 있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①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할 때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한다.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 그런데 개정안은 시행령의 특수임무유공자 등록결정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보상의 근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행 보훈 체계와 상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 보훈 체계는 ‘전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전상군경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공상군경⁷⁾,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사망·재해부상군경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팔 전몰·전상군경으로 인정·보상하는 것은 보훈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둘째,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부상자를 일괄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차등적인 보상·예우를 받고 있는 타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와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보상 대상자에게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회유보의 관점에서 시행령에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에서 직접 규정⁹⁾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훈 체계상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한정¹⁰⁾하여 국가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과 같이 특수임무부상자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특수임무사망자·부상자를 일괄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보상하는 것은 보훈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참고1

특수임무유공자 현황

□ 적용대상

적용대상	근거법령	대 상 요 건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 등록현황

(‘26. 5월말 기준, 단위:명)

구 분	사망·행불자	부상자	공로자	합 계
본 인	-	1,134	1,671	2,805
유 족	26	199	957	1,182
합 계	26	1,333	2,628	3,987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2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수혜 사항

구분	내 용
수당 지원	○ 생계지원금 : 80세 이상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한함 *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불가, 2022.2.18.부터 시행
교육 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부상자, 공로자 본인 및 자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중고·대학교) ○ 학습보조비 지급 : 부상자·공로자 본인·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중고·대학교), 자녀(중고등학교) ※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 2016.6.23.이후 등록한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한 경우에 지원
취업 지원	○ 보훈특별고용 : 본인, 배우자, 부모 및 39세 이하인 자녀 3인까지 ○ 가점취업, 직업훈련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2016.11.30.이후 등록신청자 : 보훈특별고용일반직등 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1명(1인당 취업지원 횟수 3회) ※ 2016.11.30.이후 등록신청자 : 부모, 비상이자 및 상이 7급 자녀 취업지원 비대상
의료 지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 국비 ※ 20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단, 전·공상군경 복합등록자의 경우 2012.7.1.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에 대해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보철구 지급 - 응급진료 :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훈관서 신고 * 14일경과 3년 이내 신고시 처음 입원한날부터 14일의 진료비만 지원('18.7.31 이후 이용자만 소급적용) - 등록 신청 시부터 결정 이전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선 납부 후 정산 (단, 위탁병원은 '21.4.1.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필요 시 보훈병원장의 승인 하에 외부 전문병원 진료 의뢰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 - 보훈병원 진료 : 60% 감면 ※ 20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에게 지원(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부모 모두 포함)
대부 지원	○ 대상: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주택(구입,임차,개량), 아파트 분양,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 대부한도액은 300~8,000만원까지(연 3.0~4.0%)
주택 우선공급	○ 신규건설·공급주택 우선공급 : 분양 5%, 임대 10%(공급물량기준)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 2%(공급물량기준)
기타 지원	○ 양로지원 : 무의탁자(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단 부상자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유공자 본인 입소 시 배우자 동시 입소 가능(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양육지원 :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제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보훈요양원 및 민간요양시설 이용 : 생활수준 고려 - 부상자 :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기타 대상자와 배우자, 선순위 부모 :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지원 ○ 수송시설 이용지원 : 부상자 본인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지원요건 해당자 ○ 고궁 등 무료이용/협약콘도 감면이용(소노한화일상·청풍주문진·리솜통영스탠포드) ○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증명 등 증명명 발급수수료 면제 ○ 영구용태극기·대통령령의 근조기 증정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유공자 본인 사망시, 지원요건 해당자)

자료: 국가보훈부

